

1. 개정이유

연안재해 위험평가제와 바닷가 등록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「연안관리법」에서 부령에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연안재해 위험평가제 및 저감대책 수립·시행관련 세부사항 규정

1) 연안재해 위험평가지 재해의 발생위치·빈도·크기 및 피해대상 현황 조사, 연안의 개발·이용전망 분석, 지역별 위험정도 전망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(안 제14조)

2) 연안재해 저감대책 수립시 추진계획·기관간 협력사항·연구개발, 정보수집·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(안 제15조)

3)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안이용개발계획 등 승인·변경시 위험평가결과를 고려하도록 한 개정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이행실적 점검 및 자료 제출 요청 근거 마련(안 제16조)

나. 바닷가 등록 대상, 등록정보 작성기준 및 변경 사유·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

1) 바닷가 실태조사 등에 따라 연안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하는 바닷가의 최소면적을 규정하고, 바닷가 정보의 해석과 적용의 통일성을 위해 바닷가의 위치, 경계, 관리번호의 부여방식 등 등록정보의 작성 기준을 규정(안 제17조 및 별표)

2) 바닷가 등록정보의 주기적이고 즉각적인 현행화 및 관련 사항의 정확성 도모를 위해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하는 요건을 규정하고, 공

유수면관리청의 바닷가 등록정보 변경 요청 방법 및 이에 따른
해양수산부의 처리 절차를 규정(안 제18조 및 별지제6호서식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
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를 제19조로 하고,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(연안재해 위험평가의 내용)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연안재해 위험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연안재해의 발생위치, 빈도, 크기 등의 현황조사
2. 연안재해의 인적·물적 피해대상 현황조사
3. 연안의 각종 개발·이용 전망 분석
4. 지역별 연안재해의 위험정도 평가 및 전망
5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5조(연안재해 저감대책의 내용) 법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연안재해 저감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연안재해 저감을 위한 기본방향
2. 연안재해 저감을 위한 사업 및 추진계획
3.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
4. 연안재해 저감 관련 연구, 기술개발, 정보수집·관리 등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6조(평가결과의 이행 점검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4조의6제4항에 따라 연안재해 위험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.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7조(바닷가 등록 대상 등) ①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라 연안정보 체계에 등록하여야 하는 바닷가는 법 제2조제2호가목의 바닷가 중 면적이 33m² 이상이고 가장 넓은 부분의 폭이 1m 이상인 바닷가로 한다.

② 법 제34조의7제2항 각 호의 작성 기준은 별표와 같다.

제18조(바닷가 등록정보의 변경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바닷가의 면적, 위치 및 형상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법 제34조의7제5항에 따라 바닷가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.

1. 국립해양조사원이 실시하는 해안선 조사
2. 인공구조물의 철거 및 원상회복 등
3. 연안침식 등 자연적인 바닷가의 변화
4. 토지의 바다 쪽 경계의 변화

② 법 제34조의7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바닷가 등록정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바닷가 등록정보 변경 요청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제17조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연안정보체계에 등록하고 공유수면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

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바닷가 등록정보의 작성 기준

구분		작성기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위치	좌표 정보	- 바닷가 양 끝단과 중심점의 좌표로 표시하고, 좌표정보는 「해양조사와 해양 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단일평면직각 좌표계 또는 지구중심 직교좌표계로 표시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주소 정보	- 바닷가가 접한 토지 중 바닷가 양 끝단이 접한 토지의 지번으로 표시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경계		- 바닷가의 육지쪽 경계는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9의2호의 연속지적도의 바다쪽 경계에 따른다. - 바닷가의 바다쪽 경계는 「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1항제3호의 해안선으로 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면적		- 면적의 단위는 m ² 로 하며, 1m ²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.5m ²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.5m ² 를 이상일 때에는 올림하여 사용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관리번호		- 관리번호는 시·군·구별로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고 육지와 도서지역에 위치 하는 바닷가를 구분하여 부여한다. - 관리번호를 부여 순서는 서쪽에서 동쪽, 북쪽에서 남쪽방향으로 해안선을 따라 부여한다. - 바닷가가 접한 토지의 관할 행정기관코드(5자리), 육지와 도서를 구분하는 구분 코드(1자리), 바닷가 연번(4자리), 확대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 적용 할 수 있는 보조연번(4자리)을 조합하여 총 14자리로 구성한다. <table border="1"><tr><td>0</td><td>0</td><td>0</td><td>0</td><td>0</td><td>0</td><td>0</td><td>0</td><td>0</td><td>0</td><td>0</td><td>0</td><td>0</td><td>0</td><td>0</td></tr><tr><td colspan="5">행정기관코드</td><td>도서 육지 구분</td><td colspan="4">바닷가 연번</td><td colspan="5">보조연번</td></tr></table> - 바닷가가 다수의 행정기관에 걸쳐 위치하는 경우 가장 많은 부분이 접하는 행정기관의 기관코드를 활용한다.	0	0	0	0	0	0	0	0	0	0	0	0	0	0	0	행정기관코드					도서 육지 구분	바닷가 연번				보조연번				
0	0	0	0	0	0	0	0	0	0	0	0	0	0	0																		
행정기관코드					도서 육지 구분	바닷가 연번				보조연번																						

바닷가 등록정보 변경 요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구분	[]바닷가 신규 등록 []등록 바닷가의 폐지 []등록 바닷가 정보의 변경 []기타	
신청인	기관명	
	담당자 성명	전화번호

신 청 내 용						
위치		기존정보		변경정보		사유
좌표	인접 토지 지번	관리번호	면적(㎡)	관리번호	면적(㎡)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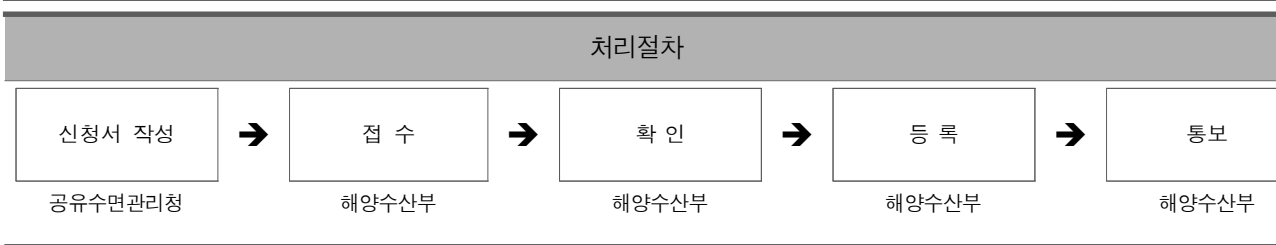
위와 같이 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해양수산부장관 귀하

붙임 서류	1. 바닷가 위치도 2. 현장조사 사진	수수료 없음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

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4조(연안재해 위험평가의 내용)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연안재해 위험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u> <u>1. 연안재해의 발생위치, 빈도, 크기 등의 현황조사</u> <u>2. 연안재해의 인적·물적 피해 대상 현황조사</u> <u>3. 연안의 각종 개발·이용 전망 분석</u> <u>4. 지역별 연안재해의 위험정도 평가 및 전망</u> <u>5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
<u><신 설></u>	<u>제15조(연안재해 저감대책의 내용) 법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연안재해 저감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u> <u>1. 연안재해 저감을 위한 기본 방향</u> <u>2. 연안재해 저감을 위한 사업 및 추진계획</u> <u>3.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</u>

<신 설>

<신 설>

4. 연안재해 저감 관련 연구, 기술개발, 정보수집·관리 등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6조(평가결과의 이행 점검) ①

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4조의6제4항에 따라 연안재해 위험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.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7조(바닷가 등록 대상 등) ①

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라 연안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하는 바닷가는 법 제2조제2호가목의 바닷가 중 면적이 33㎡ 이상이고 가장 넓은 부분의 폭이 1m 이상인 바닷가로 한다.

② 법 제34조의7제2항 각 호의

<신 설>

작성 기준은 별표와 같다.

제18조(바닷가 등록정보의 변경)
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바닷가의 면적, 위치 및 형상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법 제34조의7제5항에 따라 바닷가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.

1. 국립해양조사원이 실시하는 해안선 조사
2. 인공구조물의 철거 및 원상회복 등
3. 연안침식 등 자연적인 바닷가의 변화

4. 토지의 바다 쪽 경계의 변화

② 법 제34조의7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바닷가 등록정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바닷가 등록정보 변경 요청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제17조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연안정보체계

<u>제14조</u> (생 략)	<u>에 등록하고 공유수면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</u> <u>제19조</u> (현행 제14조와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